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4.(금) ~ 11. 21.(금)

2.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운영, 아이빛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신규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어린이집(가칭)	본리동358-3번지 (본리동)	607.8655m ² (지상2)	50명 (예정)	민간위탁	993

○ 재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운영 (원장)	위탁기간
아이빛 어린이집	조암남로182(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차)	214㎡ (지상1)	43/42	現 김정자	2021. 4. 1. ~ 2026. 3. 31.(5년)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신규, 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 자문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및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재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본리동 358-3번지 일원의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아파트는 총 993세대로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025년 9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5년 10월 21일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체결하여 신규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 아이빛어린이집(조암남로 182, 월배아이파크1차)은 2018. 11. 1.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2025. 3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영역별 우수를 받았으나 현재 위탁체(원장 김정자)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규 및 재위탁 대상에 대하여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임.
- 보육 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4조의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④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